



부 산 세 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출입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오류 기준 및 주요 오류내역 통보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사후검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과태료 부과 적용기준 및 유형별 오류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선사, 포워더 등 물류업체에서는 적하목록 작성시 품명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범 운영 : '12.9.1~9.30
- 과태료부과 : '12.10.1부터 적용 예정
- 사후검증대상 : 수출입적하목록 신고 품명(환적화물 포함)
- 참고사항 :
 - 선사가 포워더의 House B/L을 취합하여 'C'타입 B/L을 제출하는 경우, "AS PER ATTACHED RIDER(LIST)"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 사용가능
 - 선사가 품명이 수개인 'S'타입의 Master B/L을 제출하는 경우와 포워더가 품명이 수개인 House B/L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품명 2~3개 AND OTHERS"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 사용가능

- 붙임 : 1. 수출입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 기준 1부,
2. 수입적하목록 품명오류 내역 1부
3. 수출적하목록 품명오류 내역 1부. 끝

수출입적하목록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 기준

□ 관련규정

-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별표3
 - 과태료 부과대상 : B/L추가,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 등

□ 세부 적용기준

-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

적용기준	예시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광의어)	Sample, Parts, Accessory, Goods, Gift, Products 등
④ 상표(BRAND)	NIKE, ADIDAS 등

- 향후 적하목록 오류검증을 통해 명백한 품명오류 추가 시달

□ 시행방안

- 시범운영('12.9.1~9.30)
 - 명백한 품명오류 해당 B/L건을 주간단위로 세관에 통보
- 명백한 품명오류 과태료 부과('12.10.1 예정)